

인권정보자료실
Md1.27.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 그 여섯 번째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차법 다시보기 I

■ 일시: 2003. 9. 17. (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신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록번호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다운회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내한익수족연구회 · 내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양복지재단 · 부림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경인시우서비스노동조합 · 오픈메스이지부 · 서울공두리봉사회 ·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키야콜밴 · 시각장애인여성회 ·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울"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시민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 국민 "깨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평의시설추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산재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정태수말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프렌드케어 · 태화생숙는길 · 푸른하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 한국적은키(원골무형성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재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한국장애인연맹) · 한빛장애인아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Md1.27.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연속공개토론회>

- 그 여섯 번째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차법 다시보기 I

■ 일시: 2003. 9. 17. (수)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1004호 전화:(02)784-3501/2

팩스:(02)784-3504 / e-mail: kofod21@hanmail.net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교사회 · 노들장애인야학 · 다문화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의수족연구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림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오픈에스이지부 · 서울공두리봉사회 ·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카이크롬 · 시각장애인여성회 · 여성장애인자조모임 "다울"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시민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극단 "끼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프렌드케어 · 대화생숫는집 · 푸른하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제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빛장애인이동봉사대 이상 가나다順

토 · 론 · 회 · 순 · 서

사회 : 김효진 (한국DPI 기획실장)

○ 1부. 여는 이야기

- 주제발표 1
여성주의 시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짚어보기/ 김광이 1
- 주제발표 2
교육과 노동에서 장애여성차별과 법적 대안/ 조 옥 8
- 주제발표 3
차별사례/ 김미송 28
- 주제발표 4
문화와 접근권에서 장애여성을 말한다/ 최해선 30

○ 2부. 주제를 토론

- 주제를 토론 1
/ 김기선미 47
- 주제를 토론 2
/ 김대성 48

여성주의시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짚어보기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부위원장

1. 나는 여성장애인이다

매우 어려운 일과 마주앉아 힘겨루기를 하는 듯 하다. 이 주제를 어떻게 공감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나의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절실하게 여성주의에 공감되고 이해되었던 그대로 나의 감수성을 존중하고 용기내어 말하고자 한다.

간접적으로 나의 장애인 인권운동과의 만남은 80년대 초반 “대학 정립단”에서 활동하던 친구를 통해 시작되었다. 70년대에 장애인계에 큰 희망을 줄 것처럼 소아마비회관(현재 정립회관)이 건립되었고, 장애인들의 정서를 공유하고 장애의 어떠한 몸짓도 서로에게 어색하지 않은 곳이었다. 거기서 대학생이었던 친구와 그의 친구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소외와 그 시절의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서 대학생들의 어려움, 장애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로하고, 술과 허탈한 웃음으로 서로 위안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 중의 5명은 대학 졸업 이후에 서로 일정금액을 모아 “장애인복지신문”의 발판을 만들고 발기인을 모집하였다. 그들 중의 한 명인 내 친구는 겉으로는 소탈하지만 내심의 예민함과 여성적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여성장애인이었다.

80년대 중반에 교통방송에서 한강대교가 막히고 있다는 교통정보를 내보냈다. 장애인들이 차로 한강대교를 막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명이 석유통을 들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하고 있었다. 그 뉴스를 들으며 처음 떠오른 것은 “차로..?”와 “저렇게 과격하게밖에 할 수 없을까”였다. 늘 나에게 운전하고 다닐 차가 있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때였고, 그들 속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그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였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이후에 장애인 운동의 초석이 되어 현재까지 여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다른 일부는 긍정적 삶의 방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제한된 선택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논쟁 속에도 그들 중의 소수인 여성장애인들이 있었다.

90년 초반까지 몇 번인가 이러한 운동속에 들어오기를 제안받았었다. 그 의기가 부럽기도 했지만 내 장애상태로 그 거칠음에 동화할 수 없었다. 다른 역할을 상상해보아도 물건하나 제대로 들 수 없고, 남성도 아닌 내 역할이 그려지지 않았다. 간혹 먼 발치에서 보거나 듣는 바로는 그들속의 여성장애인들은 경증이었다. 또한 아무도 구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립에 대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과 초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싸우자’ 그뎨 그랬다.

직접적으로 나를 여성장애인 운동, 나아가 여성과 장애인, 남성¹⁾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일시에 자극한 것은 “장애여성”이라는 복합명사였다. 90년 중반에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했다. 어느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혹시 장애여성의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더도 필요없었다. 가슴깊은 곳까지 한순간의 요동이 느껴졌다.

‘맞아! 내가 장애인인데다 여자여서 이렇게 힘든 거였어.....’

늘 들어왔고 거부하고 싶던 “장애인이니까”가 아닌, “장애여성이어서”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를 시도해주었다. 만만치 않았던 이전의 삶보다도 더욱 적극적이었고 조용한 뜨거움이 늘 내안에서 나를 자극하고 있었다.

2. 여성주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운동 초기에 남녀평등을 주장하고²⁾ 그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할 때, 남성은 물론 많은 여성들조차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주의는 여성상위시대를 만들려는 못된 짓거리며, 그만큼 안그래도 힘든 세상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생하는 남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시각은 많이 줄었다. 반면 잘못 이해하여 특정한 여성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²⁾

여성주의는 성평등주의이며 나아가 모든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의이다.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저항과 대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주변에서 중심을 보는 전복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이영자, 1999). 여성주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가부장 사고가 만나서 가정과 사회에 미친 모순과 사회발전의 역기능을 지적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와 유교전통이 만나서 정상성의 사고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이것이 합리화되고 어떻게 은폐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기표는 효율성과 생산성이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정규직 고용은 여성에 대한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유발하므로 여성을 배제하게 된다(김기선미). 따라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다시 가정 내 사적영역으로 역할을 재고착화시키려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비정규직화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정치력을 위하여는 가부장의 두겹을 쓴 가족이기주의를 지양하여야 한다고 한다. 가부장제는 家를 중심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緣을 중심으로 한 구성체를 획득하려 한다. 가부장 남성은 더욱 힘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은 있는 힘을 다해 가부장을 조력하고 새로운 가부장 후보를 잘 키워내야 한다. 여성은 결코 임신 출산이 개인적 책임이나 家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생산 과정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에 관련한 결정 과정에는 여성이 아닌 다수의 남성들이 주체였다.

1) 여기서 여성장애인에 대비하여 남성장애인이라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비장애남성이라 하지 않았다. 자세하게는 후술하고자 한다.

2) 여성주의가 출발하게 된 정신이 왜곡된 것은 지적되어야 하지만, 여성운동과정에서 배제와 소외의 문제는 차이가 있는 다른 여성의 시각에서 짚어져야 한다.

3. 장애인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보호속에서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성별도 없는 장애인?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시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생계의 문제는 여성의 배제논리와 다르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복잡한 장애특성에 개인적 필요가 다르니 평균과 보편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라면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생산력에 대하여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기업으로서는 이윤의 사회환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선물상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것이 기업홍보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공적영역에서 더 심각하게 파급효과를 미친다. 군징병제도는 남성들의 최대 화두가 되는 공통경험에서 남성장애인의 비사회화를 가중한다. 남성간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조차 남성장애인은 열외이거나, 비장애남성의 우월한 자존감을 자극하여 인정할 수 없게 하거나, 남성장애인은 소심하거나 순수하여 교섭력이 없으므로 남성장애인을 힘의 중심에 앉히는데 타협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장애인도 여성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무성적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우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중증남성장애인에겐 더한 경험이다. 남성장애인은 사회속에서 성별이 부정되는 경험과 남성으로서의 가부장 역할의 의무감에서 오는 혼란을 경험한다.

시설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속에서는 남성장애인은 성별이 존중되지 않은 채 가정에서는 가부장의 부담을 갖고 살아왔다. 중증의 남성장애인은 형제 중의 맏이여도 가부장의 책임은 은연중에 차남에게 넘겨지고, 심리적 고통은 형식적 가부장 의무자인 형이나 실질적 의무자인 동생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가일수록 남성장애인의 가부장 부정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 속에서는 남성장애인의 남성성은 경시된다. 가족내에서의 남성으로서의 의무감이 사회속에서 다른 비장애남성이 존중되고 경험하는 사회적 권력, 힘의 행사를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에게도 힘을 중심으로 한 외모 혹은 몸의 정상성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준다.

(나는 여기서 남성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담론화하기를 시도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못했다면, 서로 그런 이야기들이 깔려있었다면 내면에 무엇이 막아왔는가.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게, 혹은 “남자답지 못한” 감수성을 표현하는 것이라서?- 남성다워야 하는 것이 자신을 구속했다면 이참에 남성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새로운 문화작업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80년대 중반부터 곧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될 듯 장애인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비장애인들이 주체였다. 그렇게 장애인의 인권은 없고 선택된 후에야 보호만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더욱 소외를 가중하고 명분은 공고해지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장애인만의 시설화한 집단적 일터가 대기업의 의무고용율을 대신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장애인을 리프트나 승강기에서 추락사하게 하고 여전히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이동보장법(약칭)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주의는 당사자주의로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진정한 소비주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타인에 의해 대변되어온 관행을 거부하고, 자기에 관한 주체로서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에게 있어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이념이다.

4. 여성장애인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장애인계에서도 가부장전통은 뿌리를 든든히 하고 있다. 남성장애인은 장애인계에서는 비장애남성이 행사하는 가부장적 힘을 획득하고 이를 행사한다. 모든 장애인단체의 장은 지금까지 남성이었고, 주요 역할들을 남성이 주도해왔다. 실제로 성별을 구분한 장애인에 관한 통계는 교육, 노동, 외부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남성장애인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성별과 장애를 구분한 수치에 의하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는 비장애여성이 훨씬 유리한 수치를 나타냄에도 장애인계에서 비장애여성은 남성장애인보다 하위의 일을 주로 해왔다. 장애인계에서 남성장애인은 비로소 성을 인정받고 권력을 획득하였으나 빠리빠리하지 못한 여성장애인을 가정내로 역할을 몰았으며, 장애인계에서 드센 여성장애인은 운동가로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힘들었다.

가부장가족내에서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의 주체로서도 거부되거나, 권리를 획득하였어도 어쩌다 운이 좋은 장애인일 뿐이었다. 모성권은 직간접적으로 부정되면서도 여성의 역할은 고스란히 떠맡겨졌다. 그 역할조차 어려운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성은 부정되고 가치평가가 되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에 대한 그나마의 “남자니까”받는 가부장에 대한 존중과 비교된다.

여성장애인의 생존과 존재의 문제는 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아실현을 말하는 것은 차치하고 생존권 획득에 전제조건인 교육율도 낮지만³⁾,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존재로서는 부정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적대상이거나, 성차가 없는 그저 여리고 사회적 능력을 확신하기 어려운 장애인일 뿐이었다.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것을 스스로 자랑삼아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도 미미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여성장애인의 일처리 능력에 경계심을 품던 동료 비장애여성의 노골적인 비하, 부도직전에 고용한 몇 명의 경력직 장애인 덕분에 기사회생하고도 회사의 어려움을 핑계로 몇 개월씩 밀린 급여에 대한 보장없이 해고하고서 다시 비장애인을 고용하고는 불쌍해서 일하게 해주었다던 사업주, 사내에서 도망갈테면 가보라며 성추행을 시도하려던 남성, 장애인 그것도 여성장애인이 외주업체 직원으로 방문한 것에 당황해하며 신뢰하지 못하던 거래처, 일을 맡기고는 답답해서 언제기다리냐며 다시 비장애여성에게 외근을 주문하며 한숨을 숨기지 않던 상사.....이것이 나의 10여 년 가까운 고용현장에서의 경험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사회지표에는 성별분리 항목이 설정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서 성별분리조사는 최근 몇 년내에 이루어졌으나, 장애가 있는 여성은 “모든 여성”에서 제외되어 여성 내의 지위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간접적접근을 통해 판단할 뿐이다. 여성의 연대에 주장과 다양성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몸과 힘을 중심으로 한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이 용인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득 문화에 함몰된 기득권을 획득한 일부 여성들에 의해 발등을 찍히는 기분이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여성운동과 장애인운동, 소수자 운동의 흐름을 타고 권력을 획득한 이들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새로운 정치력을 재

3) 여성장애인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68%로, 남성장애인 41.4%, 비장애여성 25.6%와 현격한 차별 속에서 살아왔다. 전문교육과정이라 할 대학 졸업율도 여성장애인은 4.2%에 불과하다.

생산하는데 가장 큰 힘은 이전과 지금과 이후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으로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질문받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관련법에 장애인당사자의 절실함이 배어있지 않듯이, 동법에서도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명문의 규정으로만 해석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속도에(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여성에게 이 법률의 적용이 쉬워진다.

여성장애인의 경험은 여성이고 장애인이며서로만 말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적 장애의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외출을 혼자 할 수 없어서, 일찍 들어가 밥을 해놓아야해서, 폭력 때문에, 부모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 해서, 내 몸이 작고 초라하고 빼뺄어져서, 혼자 장을 볼 수 없어서,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집에서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오빠 내외가 나를 책임질 거라고, 회사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자고 안해서....

5. 당사자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주의의 유용성

대안적 여성주의는 분리 이원화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재구성을 할 것은 제안한다. 정의·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적영역에, 사적영역에서 도덕적으로 강조되었던 배려·유대·책임·모성의 개념들을 공적영역에서 새로운 실천원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한다.(이영자, 1999)

장애인들의 문제를 경제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함양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국가 운영과정에서 장애의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사업 같은 개인적 영역으로 밀어두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 주장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여성운동의 토대는 이미 기득화된 학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의 경험적 삶이 여성을 움직이게 하였고, 여성운동의 경험으로 여성주의가 만들어졌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경험적 삶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여성주의인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인 것이다.

당사자주의는 자기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자기대표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주장하는 것으로 경험에 의한 사고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전개해온 경험중심적 사고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험중심적 사고는 권력을 가진 남성⁴⁾ 중심으로 개념화된 정상성에 간과한다. 사적인 차별을 보다 역점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차이를 들여다보게 한다. “개인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내재화하여 서로 다른 여성간의 나아가 다른 사람들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대하여 정치화할 것을 제안하게 한다.

여성주의는 소수자의 소외 관점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여 다양한 운동방식을 시도한다.

“현 체제와 문명에 안주하고 그 주류에 적응, 편승하는 것에 주관심을 갖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진보란 어느 체제이든 간에 그 체제의 모순과 성모순을 함께 꿰뚫어보는 문제의식, 분

4) 나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비장애남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든 남성을 지칭하여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남성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들에게 답을 주기 바란다.

석력,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저항과 아울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영자)

장애인들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역설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시민단체에 서는 집단적으로 선택된 우리의 대표를 만들어낸 경험이 없다. 진정한 연대애의 부재, 정치적 이념 토대의 미흡, 사회속의 장애의 문제를 탈가부장적 관점에서 권리로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미흡, 일부 권력을 획득한 장애인의 주류문화에의 안이한 편승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겠다.

6. 나오며 : 장차법 제정 과정에 대한 제언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에 모든 장애유형과 모든 장애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사회적 신분이던, 어떤 장애유형이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바라고 있음에도 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속도와 정상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애인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기 성찰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힘갖추기에서 소외된 장애유형과 단체가 있음에도 장애인시민단체조차 우리들 세계에서 진정한 연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부족했고,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방치하여 왔다. 따라서 장애인계에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고 요구되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운영을 따라갈 수 없는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의 방식과 초점을 명확하게 개발하지 못한 혼란의 과정일 수도 있다.

진정한 장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인식 출발점을 설정해야 하는가.

혹자는 왜 여성장애인들은 분리되어 운동하려 하느냐고 한다. 오히려 더욱 비주류 밀리고 분리해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리 누구도 분리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다름을 차이와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다원적인 문화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는가. 여성장애인의 억압받는 복합적 차별 경험들이 문화화되고 재사회화로 구성되기를 희망하는가.

여기에는 여성장애인도 모든 여성이고 모든 장애인이며 모든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개인적이며 집단적 특수한 경험들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여성주의이며 당사자주의로 실현되어야 할 평등하게 함께 살기는 어떤 인간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성/남성, 장애인/비장애인으로만 구별되지 않는다.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자 하는 시도로 정의된 개념인 ICF는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장애인들에게 유의미하다. ICF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 성, 인종 등이 결합하여 그 개인이 겪는 사회적 장애의 경중을 판단한다.

다만 여기서 ICF정의의 중심을 몸의 정상성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적 환경적 요소들의 작용만을 변수로 삼은 것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장애의 문제, 성차의 문제는 자본과 생산의 극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의 중심이 “정상”이라는 가면으로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으로 배제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여성은 다시 재생산의 주체라는 명분으로 가정 내로 밀려질 것이며, 장애인은 복지적 보호, 생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가정으로

시설로 밀려질 것이다.

차별은 성별, 장애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여성과 장애인을 특정하여 흠집을 내고싶은 생각도 없다. 우리속의 소수를 다시 살펴보자.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고 낙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장애유형과 성별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사회를 인식하기 바라듯이 고려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지 들여다보자. 운동과정에서 단체간의 차이도 보살펴볼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수성을 발휘하자. 이를 고려하여 법 존재를 위한 법 제정 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추련 소속단체, 개인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참여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신문을 주발기인이었던 친구와 80년대의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그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고 있을까!

서로 “힘 주고 받기와 익숙해지기”를 제안하고 싶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은폐와 거짓으로 야만인이 되어가는 세상에 도전해보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지혜도 여성장애인운동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고찰”,
제3기 여성장애인 인권 아카데미 자료집,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3.5.
- 김기선미,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 노동자로 살아남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 김은정,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3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당사자주의와 장애인운동, 2003.7.
- 배용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제1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공청회 자료집, 2003.6.
- 벨혹스/박정애, 행복한 페미니즘, 백년글사랑, 2002.11.
- 이영자, “여성학의 최근 추이 및 대안적 패러다임 찾기”,
제1회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교육 강의 자료, 1999.10.
-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어디로 갈 것인가”, 여성정책 수련회 자료집, 2002.
- 고정갑희, “성장치와 여성주의 문화론-구분하기, 가로지르기, 바꾸어내기”, 여성이론 통권 2호, 2000.1.
- <http://cafe.daum.net/KDA2003>(장애인차별금지법연구모임 카페 자료실)

교육과 노동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

조 옥

장추련 상집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I. 들어가는 말

- “왜,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가?”

여성장애인차별연구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나누는 중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장애인 활동가 중에는 직업훈련의 하나로 한복과 양재기술을 배운 이가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교육권투쟁 당사자로 잘 알려진 P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10대 후반에 복지관에서 한복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장추련 법제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10대 후반에 양재기술을 배워 동대문 뒷골목에서 먼지와 싸우며 재봉틀을 돌린 경험을 갖고 있다. 여성장애인 자조모임의 리더였고 지금은 현장 활동가로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있는 M씨는 20대에 한복기술을 배워서 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성직자이면서 활동가로서 흔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B씨는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바느질을 열심히 배웠고, 30대에 들어서서야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예가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여성장애인 운동의 현장과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의 교육과정과 직업경험을 추적해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거리가 될 것 같다.

이 같은 사실은 무얼 의미하는가? 먼저 여성장애인은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아직도 67.8%나 된다.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장애인의 교육 현실이다. 자기 결정권과 무관하게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야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검정고시 동문...”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은 노동현장에서도 밀려나 있다. 직업 선택의 길이 그만큼 좁을 수밖에 없다. 재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5%로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진부한 이슈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모모 하는 여성장애인 활동가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어린 나이에 한복과 양재 기술을 배웠다니.. 물론 한복과 양재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장애인차별이면 되는데, 우리는 왜 여성장애인차별⁵⁾을 말하려고 하는가? 교육과 노동에 있어서도 장

5) 여성장애인은 여성차별과 장애인차별이 중첩되므로써 발생하는 차별과, 장애인 문제에서 배제되므로써 발생하는 차별, 여성문제에서 배제되므로써 발생하는 차별, 이제가지 형태의 차별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경험은 때때로 비장애여성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고, 남성장애인의 경험과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사회적 위치에서 겪는 차별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은실 외,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p. iv.

애인차별이면 되는데 우리는 왜 여성장애인 차별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몇 겹의 차별의 질곡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여성의 문제에서도 배제되고 장애인의 문제에서도 배제되어 묻혀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들. 이러한 현상은 삶의 기본권인 교육과 노동의 현장에서 차별 받고 소외되어 있는 경험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 교육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짚어본 후 각 분야에서 여성장애인 차별의 경험을 풀어 내보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 교육과 노동문제 바로 보기

1.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휠체어에 의지해 집에만 있었던 이십대 초반에 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려 했을 때 이 사회는 온통 장벽뿐이었습니다. 분노감이 치밀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 채 살았던 그때의 생활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성장애인단체 대표가 한 말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어떠한 의식과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법이다.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만큼 세상은 보이는 것이다.

교육과 노동에 있어서는 어떤가? 장애인의 문제를 논할 때 여성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장애인 교육과 노동의 이름으로 장애인 내부의 차이, 성별에 의한 차이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문제를 논할 때도 여성장애인은 배제되어 왔다.

이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교육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비주류이며 주변인으로서 가장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사회 구조와 현상을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 불합리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비쳐질 수 것이다.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은 여성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동성애자,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시각에서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된다.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일 상속에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관념적인 언어 수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당사자의 경험과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당사자주의가 절실하다.

2. 차별 감수성 키우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중에는 흥미로운 통계들이 눈에 띈다. 재가장애인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65%가 많은 편이다 이상이었고, 35%는 거의 없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은 59%가 많은 편이다 이상이었고 41%가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여성장애인이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남성장애인보다 덜 받고 살고 있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같은 결과는 분명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차별 감수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장애인이 교육현장의 경험에서 차별감수성이 그 만큼 낮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차별에 대한 감수성 정도는 차별 받는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얼마나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경험을 차별로 인식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나는 차별 받지 않는다” 또는 “차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문제는 아닌 것 같다”에서부터 “삼중 억압을 받고 있다”까지 다양하게 차별감수성을 드러냈다.⁶⁾

아래내용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사례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⁷⁾

○ 차별경험을 거부하거나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유형

면접에 응한 여성장애인들은 대체로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거부하거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아래는 1급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사례이다.

(이 학교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없는 거네요?) 없는 거 같아요... 근데요... 저요, 실명하면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안 보인다는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외에는 나한테 아무 것도 힘든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명하고 나서 힘들다고 생각을 안하고 살아요 아예....

(지금까지 말하신 것 중 여성이어서 불리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성차별 받은 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차별 받은 적이 없어요. (중략)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진로 세울 때 얼마나 고려하세요?) 전혀 고려 안해요...

(과제작성이나 시험 볼 때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였어요?) 글을 좀 빨리 못 쓰는 편이고 급할 때는 많이 좀 엉망이예요. 그게 좀.. 또 시간 안에 다 못쓰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시간을 더 주지는 않았어요?) 예. (대필자를 도우미로 쓰지 그랬어요.) 워낙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내가 좀 빨리 쓰면 되고 깨끗이 쓰면 되는데...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 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똑같이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런 게 학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예...

○ 차별경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유형

차별경험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지하는 위의 사례들과 달리 자신의 차별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비판하는 여성장애인이 다수 있었다.

(학점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못하시나봐요?) 학점이요? 저 학점 많이 떨어져요...일단 우리는 필기를 아예 못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책보고. 솔직히 대학 공부에 거의 필기해 가지고 시험 치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잖아요. 책의 것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설명한 것을 다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날 강의 할 것을 조금은 어느 정도 대충 요약해서 준다던가...

(입시 준비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그게 3중 억압이죠. 아들 딸 중에서도 딸이잖아요. 딸이고, 장애인이고,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공부를 할 때도 방해가 되었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는 불끄고 자래요. 오빠들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니까 그렇게 막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었죠...사회적인 억압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약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에서요?) 지금 말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약자로

6) 김은실 외, 「여성장애인차별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pp. 15 - 16.

7) 위의 책, pp. 16 - 24

살아가겠구나... 라는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소위 밥그릇 챙기려면, 만약에 누가 날 받거나 하면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생각했어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재가장애인의 취업시 사회적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많은 편이다 이상이 71%, 거의 없다가 29%인 반면 여성은 많은 편이다가 63.5%가 거의 없다가 36.5%로 나타났다.

가부장적인 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구조적인 맥락과 통계수치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경험들을 볼 때 남성장애인 보다 여성장애인이 더 큰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시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여성장애인을 차별과 억압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고 증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 차별을 드러내고 문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성장애인 들이 차별의 감수성을 갖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차별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말과 언어를 찾아내자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포착하고, 그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름짓고, 표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그러한 문제를 표현할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⁸⁾

여성의 문제가 그러할 진데 여성의 문제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문제를 표현하고 풀어낼 말과 언어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드러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여성장애인 단체의 리더가 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J씨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말 한마디할까, 말까였다고 한다. 여성장애인이라곤 주변에서 자신밖에 없었다는 그녀는 사춘기적 감수성에다 여성장애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뭐라 표현할 길 없는 감정의 덩어리를 느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무엇이 당시 그녀를 침묵하게 했을까? 말이 많다고 해서 여성장애인 문제가 표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의 차별을 드러내고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그 답중의 하나는 여성장애인 개개인의 차별의 경험을 말하고 풀어내고 표현해서 언어화하는 것이다. 교육과 노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III. 교육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

1. 차별경험 말하기

○ 부모가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한 아버지는 따로 가구를 형성하였고, 지체1급인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자, 딸이라는 이유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5남매인 동생들을 책임지고 살림을 맡아 하게 되었다. 그녀는 3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자유로운 외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른 자매들과 남자형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지만 집안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린

8) 조순경 외,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 이대출판부, 2000), p. 5.

시절 재활원에 입소하면서 성인이 되기까지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게 되었다. 이 여성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장애인이어도 남자였다면 부모가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한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2급의 지체장애여성은 중학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고 돈을 벌다가 착한 남자 만나 시집가야 한다는 부모의 강한 권유로 장애인직업기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장애정도와 적성에 맞는 선택은 아니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여성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교실이 2층 이상이어서 부모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등하교를 할 수 있었다. 사춘기 이후 생리를 할 때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맘 고생을 했다고 한다. 더구나 자신을 도와주는 일은 주로 남학생들이 해왔기에 더욱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대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위 사례들은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들이다.⁹⁾

아래 사례는 면접조사를 통해 발췌된 내용이다.¹⁰⁾

○ 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몇 년전에 증검을 치렀지. 지금도 사실은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야학에도 다녀보고 싶고, 예전에 내가 애 아빠한테 공부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면 공부 안 하면 어떡냐고 그러면서, 또 학력 적인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고등학교 나왔다 이거지...

학교 못 다닌 게 아타까워서 작년에 검정고시를 봤어요. 다른 과목은 다 합격했는데, 영어 수학이 안 돼서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들 교육받았는데 난 너무 아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뇌염을 앓고 나서는 시집갈 때까지 집에만 있었으니까...

엄마가 업어다 줬지만 자꾸 날 쳐다보고 그런 눈초리 때문에 가기가 싫더라고, 혼자 걷질 못하니까 공부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뭘할까 싶은 게. 또 그때가 사춘기잖아요...

2. 단계별 교육과정에서의 차별¹¹⁾

1) 장애진단 시기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분석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남아보다 장애여아들이 장애 진단을 받은 시기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진단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병원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그만큼 조기 교육의 기회가 늦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2) 가정내 교육

○ 가정내 성차별로 인해 교육과정으로의 진입이 어렵기도 하다

: 여자니까, 공부는 해서 뭐하랴, 집안일 이나 해라, 기술이나 배워라 등

○ 비장애 형제나 자매들과 비교해서 교육수준이 낮고 제대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9) 김광이, "여성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연구 들어가기",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 제 4차 세미나 (2003. 4. 7) 자료

10) 오혜경·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2000), pp. 105 - 104.

11) 박지주, "장애여성의 교육과 노동에서의 차별", 장추련 여성차별연구팀 세미나(2003. 9) 자료 참조

: 오빠가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니가 편하니까 가만히 있어. 여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림 등

3) 조기교육

일부 특수학교의 무상교육과 사설조기교육기관 고액 교육비, 복지관 등의 조기교육실 등에서 조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아들은 장애남아에 비해 조기교육 혜택을 덜 받고 있다.

4) 특수교육

특수교육을 중용하거나 학력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교과과정, 성교육의 부재, 진학과 취업에 대한 선택제한 등으로 여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5) 정규 학교교육

여성장애인 담당전문인력배치 및 안내 (생리대 교환 및 심리, 정서적 지원, 여성학습도우미, 교육보조원) 미비, 여성장애인 전용화장실 부재, 의무교육 배제, 학내 성교육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미실시, 교육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몸도 불편한데, 점수줄테니 수업에 들어오지 마라 등), 특정 교육과목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이유로 수업참여를 제한하고, 또는 장애를 반영하지 않는 수업 (체육시간 배제 및 분리), 따돌림과 왕따 등으로 여성장애인이 교육과정에서 차별 받고 있다.

6) 직업교육

직업훈련 모집, 채용과 직업훈련과정, 직업훈련과목의 선택 등에서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며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7) 사회교육

현재 비장애여성 중심의 평생교육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이 사회교육 받기는 쉽지가 않다.

3. 여성장애인이 교육과정에서 인식하는 차별¹²⁾

1) 대학진학 이전의 교육에서의 차별

○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문제: 대학진학에 필요한 교과교육과정(curriculum)의 부재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직업 교육이라고 해서 안마, 침술 이런 거를 배웠어요. 고1때부터 해부생리, 병리, 한방, 침, 안마, 지압 등을 배우고, 나중에 진로 결정할 때 대부분 안마사로 많이 일하거든요. ...영어, 수학, 국어 같은 과목은 시간이 적죠. 자신이 진학을 할건지는 선택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요...

○ 여성장애인의 대학 진학 지원의 부재

담임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방과후에 남아서 대학 진학반을 만들어 보충수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에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대학을 갈 학생이 몇 명 없고, 대부분 대학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하다가 선생님이 형식적이고 의지가 없어지니까 수업분위기도 어수선하구...

○ 가족들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차별

나이가 많아서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 주위에서 반대가 많지. 시집이나 가야한다느니... 농담반 진담 반으로... '학교가야 되는데 학비 좀 보태주세요'하면 '시집을 가면 부주는 하겠는데' 이런 얘기들...

12) 김은실 외, 「여성장애인지역에 관한 사례연구 -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pp. 참조

2)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의 차별

○ 물리적 환경의 문제

화장실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남자학교였는데, 그 안에서 여자, 남자 구분지어줄 수 있잖아요.(중략) 남녀 학생이 다 섞여 있었어요. (화장실을 찾아서) 맨 처음에 1층에서만 왔다갔다했잖아요. 딱 갔는데,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화장실은 아예 없었어요.(사례 28)

○ 합리적 이유 없이 시험장소를 분리

나 혼자 시험 봤잖아요. 장애인 특별전형이니까 나 혼자 이 넓은 교실에서 혼자 본 거야. 그게 얼마만큼 시험 볼 때 나쁜지 아세요? 서로 서로 시험지 넘기면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시험 보니까 긴장이 안되는 거야. 감독관이 다 조는 거야.(장애인이 1명밖에 없었어요?)

○ 시험시간 배분의 문제

- 중증의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그리고 우리는 시험당 20분을 더 주는데, 처음에는 여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렇게 장시간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저희는 거의 반 기절해서 시험이 끝나요...

○ 시험문제 출제방식의 문제

-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수리탐구 II나 수학 같은 시험 문제의 그림을 좀 쉽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한참 만지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 면접전형과정에서의 문제

- 저 시력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면접때) 많이 기다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먼저 면접을 봐 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했던 것 같거든요. 기다리는 부분에서 많이 짜증이 났고. (면접 장소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영문과 지원자 쪽 운동장에서 있으면, 팻말 따라서 줄서서 가면 저도 애들 따라서 가면서 놓칠 뻔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 여성장애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조성하는 면접관의 태도

학부 면접 때는 선생님들이 장애에 대해 좀 무지하셨거든요. 제가 시각장애였는데 그럼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는 할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래도 영문과 박사까지 했다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3) 대학의 물리적 환경에 의한 차별

1) 편의시설 부재의 문제

- 시각장애여성의 경우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그런 거(보지 못했으니까) 잘 못 물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곳곳에 점자 표지판 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지금 종합관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들도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종합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교양 수업을 그 건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1층하고 3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2층에 걸리면 그 과목은 안 듣거나 따로

말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내리거나 해야해요.

○ 여성장애인을 위한 휴식공간의 부재

(여학생 휴게실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여학생 전용 휴게실도 없었구요, 휴게실 같은 게 있었는데, 남자 여자 짝뿔으로 사용해서 담배연기도 심했구요, 여성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말 그대로 휴게실이었다면 적어도 잡지 하나 정도는 점자로 찍어줄 수 있으면 좋겠구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

○ 여성장애인 화장실의 부재

(편의시설 때문에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동기 오빠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자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남자 여자 같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애매해요. 장애인도 남자여자 다 있는데...

○ 여성장애인을 위한 생리대 자동판매기의 부재

- 뇌병변장애여성의 경우

생리대 자판기에서 꺼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나오는 구멍이 좁아서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동전 투입구도 휠체어도 사용하기에 높을 거고, 레버 돌리는 것도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누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 효율성이 낮게 설치된 편의시설의 문제

- 지체장애여성의 경우

경사로가 건물 입구에만 있으니까, 학생 사무실이 5층에 있는데 리프트든 엘리베이터든 해주었으면 하죠. 화장실도 1층에만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는데 1층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안되죠. 기존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니 너무 좁아서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어요.

○ 위험하게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저시력의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정말 같이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장학 도우미나.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전철을 타고 다니는 것도 계단 옆에 난간을 잡고 다녀야되거든요. 난간도 이상한 난간이 있어요.

4) 대학의 학습과정에서의 차별 유형

○ 교과이수과정에서의 문제

- 결석을 권하거나 출석을 부르지 않는 행위

이 학교에 처음 편입했을 때 교양과목 영어를 들었어요. 남자 강사였는데, 장애인이 저 혼자였거든요. 수업 들어갔는데, 시작하기 전에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불렀어요. "넌 다음부터 수업 안 들어와도 돼" 그래요. "도움도 안되잖아" 그래요.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 그래요.

○ 수업 중의 폭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

시각장애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교수였는데, '병신 같은 새끼'이라고 그랬어요. 책상 위에 아무 것도 없고 녹음기만 있었나 그랬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까만 안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병신인거 부각시키려고

그러냐고. (○○씨도 거기 있었어요?) 예.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도...

○ 동료에 의한 차별

거의 저는 빼놓고 했어요. 우리는 시장조사가 많은데 애들이 저한테 말을 하고 저를 빼면 좋은데 꼭 나중에 애기해요. 불편하고 힘들까봐 뺐다구.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안껴줘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고학년이 되어서도?) 그런 적 있어요.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구..

○ 공동과제에서 일방적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역할을 부여

자기들(친구들)끼리 정해서 저에게는 일방적으로는 역할을 주죠. (참여하는데서 제외를 좀 시키나요?) 네. 나중에 자기들이 하기 귀찮은 걸 떠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 학습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차별

-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해요. 근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들어요?) 교수님 입모양을 보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힘들죠.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반도 이해 못해요.

○ 강의실 배정지원체계의 부재

시험 텀이 바로 이 시험 끝나고 저 시험... 같은 건물 안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는 교양 등에서 봐야 되고, 하나는 법과 단대에서 봐야 되면, 옮겨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약간 불리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험 처음 먼저 보는 것을 좀 더 빨리 갔죠. 이왕이면 빨리. 먼저 쓰면 나갈 수 있으니깐. 빨리 끝내고 다음 시험장으로 갔죠. 아무래도 조금하고, 정신적으로 압박감 그런 거....

2) 평가과정에서의 문제

○ 여성장애인의 학업성취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교수의 태도

1학년 때는 제가 적응을 못해서라고 치지만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한 지난 학기도 C+ 도 있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가 되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 싶다가도 “에이씨!” 하게 되고....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제가 컴퓨터로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해봤는데, 교수님들이 의심을 하시더라구요. “네가 그때 컴퓨터에서 뭘 찾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왜 내가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시험을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두 시험 봤어요.

5) 취업 준비 및 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 저희 교수님이 어디어디 신문사에 기자 할 사람 뽑고 있다 하면서도 남학생한테만 그런 걸 말씀하세요. 제가 왜 남학생한테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냐 하니까 신문사에서 남자를 원한대요. 수업시간에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망의 부재

비장애인들도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이 취업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힘들잖아요. 만약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장애인 취업 정보 제공 등)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해진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 여성장애인 차별풍토

(취업준비는 따로 하셨나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직업재활도 안되거든요. (직업재활?) 재활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직업재활인데 장애상 불가능한 거예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영역을 마련하지 않는 한은 그거 필요없는거.... 저는 항상 밀리고 밀리고.. 그랬죠.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유형

수업 시간에 성폭력 관련된 여성학 수업을 들으니깐 느끼는 건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을 때랑 장애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랑,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이랑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어 왜 장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까? 누가? 어떻게?... 어떤 남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장애 여성을 성폭행 했을까?' (그런 태도가 보여요?)

여성장애인이 꾸미거나 화장을 한다거나하면 굉장히 특이한 시선으로 봐요. (왜요?) 글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하는 건 스스로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에 여성장애인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하고 싶어도 별로 표현을 하지 못했으니까..

후배이야기인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좌변기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야하는 거예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요?) 예. 어떤 거는 그랬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그냥 남자화장실 가서 봐라... 그러는데, 자기는 정말 치욕감을 느꼈대요.

제가 남자였으면 남자들한테 도움 청하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제가 여자니까 오빠들한테 다가가서 도와달라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남자들 외모도 중시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요. 시각장애인으로써 일반 남자를 대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비장애여성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피해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장애여성은 피해자라고 인식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세미나 들었는데, 남성들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자연스레 받아들이는데 여성장애인 경우는 가슴이 나오기 시작할 때 "몸도 불편한 게 할 거 다 한다고 해서 끄꿍 봉대로 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저의 경우 다른 비장애여성들과 달리 쉽게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했고, 업히는 것이나 안겨서 올라가는 등 못 남성들의 등과 손을 빌려야 했고, 팔짱을 해야 했어요. 힘을 사용하는 성은 대다수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이성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내가 다른 남성의 등에 업히거나 팔짱을 끼고 싶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어요.

2)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내 성폭력¹³⁾ 유형

13)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학내 성폭력'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참고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7년 1월에서 1998년 6월까지 상담통계 중 학내 성폭력 관련 상담은 181회로써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했고, 이중 교수나 선배에 의한 성폭력피해가 83.4%에 이르고, 그 외에도 동료 및 교직원에 의해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교수, 선배의 술자리에서 술 따르기 강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히 과 교수님과 남자 선배들이 있는 술자리에 갔었는데, 저보고 자꾸 술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다른 여자 선배들도 있었는데, 저에게만 그랬어요. 그리고 저보고 “야, 네 예뻐 보인다.” 라는 말 등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 도움을 빙자한 성폭력

도와주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도와준 거랑, 도와준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탁 달라요. 느껴져요. (치마를 입고) 도서관 계단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불안해서 쳐다 봐주는 거라고 하면서 다리를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면서... 말은 책 들어줄까 하면서 위아래로 훑고 그랬어요.(사례 15)

넘어졌을 때 남자가 도와줄 때 순간적인 것인데 뒤에서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거드랑이로 손이 들어와 찝찝하고 당황하게 되요. 도와주려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어서...

○ 의존적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학관 관리실 아저씨 중의 하나도 저한테도 귀를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려구 해서,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고마운데 이러면 제가 마음놓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라 했더니 딸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러구요. 아무래도 도움을 받다보니. : 그 아저씨가 저한테도 그랬어요.

4. 여성·장애 관련 법안

1)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9조 (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 (평생교육<개정 2002.12.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타났다. (<http://www.sisters.or.kr/menu5/university.html>)

1-1)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①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 의한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 고시 제2002-2호)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 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7-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바목의 (1) 내지 (3)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차목의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에 한한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 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5)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실·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6)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마을·청소년수련의 집·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 차별 판단을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14)

14) 김광이, "여성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연구 들어가기", 장추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 세미나(2003. 4) 자료

1) 판단기준 참고1. 뉴질랜드 보건국(Ministry of Health)의 장애전략¹⁵⁾

[목표14]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참여 촉진

14.1 여성장애인이 남성과 동일하게 경제적 복지와 교육에의 참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의 권리 촉진 및 기회를 제공한다.

14.2 동등하고 적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4.3 여성장애인이 그들이 선택한 사람과 환경 내에서 자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4 여성장애인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비장애여성과 동일하게 건강과 재생산권 고려와 판단 기준을 보장한다.

14.5 모든 장애전략의 개발에 여성장애인의 관점을 포함한다

14.6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2) 판단기준 참고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1조(교육 등)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서 말하는 “교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하여 사회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취업·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학습·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등을 말한다.

2.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이라 함은 교육 대상자의 선발과정,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평가 등을 포함한다.

제12조(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성별로 교육대상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가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5) Minister for Disability Issues(2001), New Zealand Disability Strategy, Ministry of Health, New Zealand : 뉴질랜드 보건국의 장애전략은 15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목표에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겨져 있다. 이 번역은 이화여대 석사과정 수료 박하연 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13조(재화의 이용 등) ①이 기준에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 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 법 제7조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Ⅲ. 노동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

1. 차별경험 말하기

먼저 여성장애인 11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6)

○ 장애가 있어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직업훈련원 같은 덴 꼭 가야혀. 아주 필히. 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늘 안타까워.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이 더 나태해지는 것 같애...

○ 삼육재활원에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갔었는데 과목에 양재, 편물, 수예 같은 것밖엔 없더라구요, 근데 그건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좀 하다가 수술하고 나온 거예요

○ 복지관 작업장에서 하는 걸 가져다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일은 바쁘다고 그러는데 오래 앉아 있질 못하니까 그 양을 못하는 거예요 오래 섰지도 앉았지도 못하니까...아주 답답해요...

여성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의 몇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17)

16) 오혜경·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서울: 학지사, 2000), pp. 111 -114 참조

17) 김은정,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 직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는

○ 우리 팀에서 나 혼자 여자니까 잡스러운 일 많이 해야 되요. 눈에 보이는 게 나니까. 나만 불러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 셋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전화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 근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치마를 입구 다녀. 근데 나보고 치마를 입구 오래는 거야. 나는 치마를 못 입어요

○ 나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완전 애 취급하잖아. 특히 여자한테. 이런 전화하는 사람들 분명히 어릴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 좀 어리게 들리는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참 헨디캡이란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근데 또 목소리 굵으면 아줌마라고 의심을 하고.

○ 전화 걸어서 보험 소개하면, 그러면은 “아가씨 나한테 뭐해줄 건데? 한번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만나기가 겁나.

○ 성기 커지는 수술했다 그러면서 부산 가는데 같이 내려가자 그러고. 놀러 가는데 심심하다고 봉사자들이 그래. 비위 다 맞춰줘야 되니까 짜증나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자 그러고. 내가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봉사자들은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 나는 오는 게 싫은 거야. 접대해야 돼. 한 마디로 말해서

2. 여성장애인 노동에서의 차별과 유형¹⁸⁾

1)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진입 후)

○ 고용차별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의 역할인 커피심부름, 청소, 전화받기등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 직종차별

능력에 합당한지의 여부가 아닌 부리기 쉬운 사람 채용

예) 사무직 대졸채용 거부. 청각장애인 단순직에 많음. 시각장애인 안마. 침술(대학 졸업 후에도)

○ 승진, 배치상 차별

조사대상시 차별 많이 나타나지 않음: 실제로 없다가보다 차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 비장애 여성의 경우도 심각히 여기지 않고 당연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음.

예)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도 어려운데 승진 필요 없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지체 장애여성 ; 승진케이스에서 밀렸으나 장애를 이유로 드러내지 않고 나이가 어린 이유를 댐 (실제 그전 팀장보다 한살 아래였음)

- 고유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이동시킴(설명 없이)

- 17년동안 있던 부서가 4층으로 옮겨지면서 장애여성만 1층에 남겨짐

○ 임금차별-여러 경로 통해 드러나고 있으나, 임금차별도 당연시 인정하는 실태. 해고에 대한 두려움.

예)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감수를 역이용하는 경우

2) 사회환경에서의 차별 -고용유지에서의 차별

문, 1999. pp. 97 - 114 참조

18) 김효진, “여성장애인 노동과 차별”, 장추련 법제위 여성팀 세미나(2003. 7. 6) 자료 요약